

2023년도 2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3. 8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3. 4. 1. ~ 6. 30.(2023년 2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등

접수결과

- 2023년 2분기 총 70건 접수

[표 1] 2023년 2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	창 구	합 계	4월	5월	6월
공 익 제 보	공직자비리신고	40	10	21	9
지 원 센 터	공 익 신 고	22	4	12	6
국민권익 위 원 회	국 민 신 문 고	5	2	3	
일반민원		3	1		2
합	계	70	17	36	17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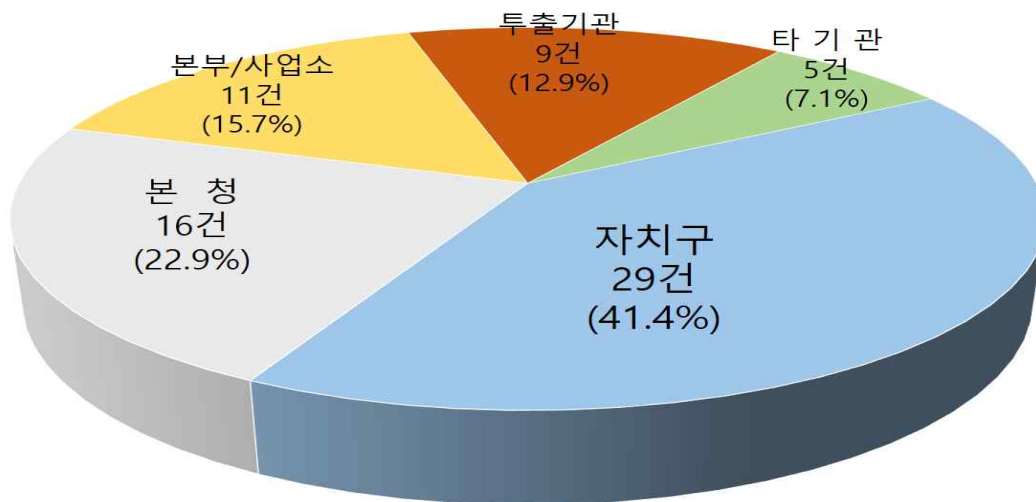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공익제보지원센터		국민권익위원회
		온 라인 PC/모바일	오프라인 우편/방문/팩스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/이첩
접수건수	70 (100%)	62 (88.6%)	3 (4.3%)	5 (7.1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9건(41.4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공식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신고 12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6건
 - 기타 일반민원 등 11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16건(22.9%), 본부/사업소 소관 11건(15.7%)
 - 본청의 경우 부패신고 9건, 공익신고 6건, 일반민원 1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6건, 부패신고 1건, 일반민원 4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9건(12.9%), 타기관 5건(7.1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부패신고 7건, 일반민원 2건
 - 타기관 5건은 국가기관 등 소관 민원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70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48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48건(68.6%)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70 (100%)	23 (32.9%)	25 (35.7%)	22 (31.4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<p>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</p>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<p>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p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<p>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</p>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48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23건 세부 내용

(표 4)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업 무 부 적 정	본 청	4	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
	본부·사업소	1	
	자 치 구	3	
	투자출연기관	4	
	소 계	12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2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본부·사업소	-	
	자 치 구	1	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5	
복 무	본 청	3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부·사업소	-	
	자 치 구	2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6	
총 계		23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25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청 원 경 찰 법	4	본부/사업소	시정1, 해당없음1, 진행중2	청원경찰 복무 관련
사회복지사업법	3	본 청	진행중3	복지법인 운영 관련
석면안전관리법	2	자 치 구	보수 및 행정지도2	공공건물 석면 안전 의심
건설기술진흥법	2	본부/사업소 타 기 관	진행중1, 민원안내1	건설 자재 품질 관련
여 객 자 동 차 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2	자동차대여사업체 관련
개인정보보호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2	개인정보 취급 관련
도시가스사업법	2	자 치 구	행정지도1, 중복1	안전관리자 선임 관련
근 로 기 준 법	1	본 청	진행중	투출기관 인사 관련
장 애 인 복 지 법	1	본 청	진행중	복지법인 운영 관련
옥 외 광 고 물 법	1	자 치 구	진행중	불법광고물
공 원 녹 지 법	1	본부/사업소	진행중	공원 폐기물 관련
도 로 법	1	자 치 구	행정지도	도로점용 조건 위반 의심
대 외 무 역 법	1	본 청	해당없음	라벨갈이 의심
공동주택관리법	1	자 치 구	진행중	공동주택 관리 관련
도 로 교 통 법	1	자 치 구	진행중	불법주차 관련
총 계	25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3. 6. 30.기준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(10)		종결(27)				진행중	취하
	처분 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 (직접제보안내)	중복 등 (중기불충분, 보완요구 등)	중지 (수사중)		
70	2	8	9	3	15	-	24	9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연번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공무원 복무 관련	본청	신분상 조치
2	부패	소방공무원 관련	본청	신분상 조치